유엔아동권리협약[1]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0년 10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전문(Preamble)

본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헌장에서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의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며,

유엔 체제하의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하고, 충분한 자유 안에서 사회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했음을 유념하고,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위 선언 및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하며,

유엔은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창한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하고,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발달과 웰빙(well-being)[2]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을 확신하며,

온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아동은 가정 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유엔헌장이 선언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 받아야 함을 고려하며,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그리고

1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문본은 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재번역 하였습니다('18.12 번역 / '19.3. 수정)

2 웰빙(well-being)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 복지와 안녕을 의미하고, 사회적 의미로는 물질적 부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킨다. 본 소책자에서 웰빙은 고유명사의 의미로 웰빙(well-being)으로 표기하며, 문맥에 따라 '행복', '안녕', '복지'의 의미로 해석한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명심하고,

아동권리선언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출생 전후 모두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하며,

국내외 가정위탁과 입양문제를 명시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상기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에는 특히 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있으며, 이 아동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보호와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아동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실질적 규정)

제 1 조 (아동의 정의)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더 빠르지 않은 한, 협약이 정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2 조 (비차별)

①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대리인[3]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활동, 표명된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조 (아동 최상의 이익)

①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협약 원문의 "legal guardian"은 "법정후견인"으로 번역되나, 본 포켓북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아동의 법률행위 능력을 대리하는 친권자와 후견인, 재산관리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법정대리인"으로 번역하였다. 협약은 부모 외에 아동을 보호하는 주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대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의 웰빙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아동 보호나 돌봄에 책임이 있는 기관, 사업 및 시설이 주무관청이 설정한 적정한 직원수 및 숙련된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안전, 보건분야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제 4 조 (권리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

당사국은 아동이 본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또는, 현지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4]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 6 조 (생명·생존·발달)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출생등록·성명·국적 및 부모에 대해 아는 것)

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분야의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4] 진화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최초로 소개한 개념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과 자율성 증진과 관련한 개념이다. 이는 아동이 눈으로 보이는 능력만이 아니라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가 가진 기본적이면서 발전 가능한 가능성을 설명한다.

제 8 조 (신분의 보존)

① 당사국은 불법적 간섭없이 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적, 이름 및 가족 관계를 비롯해 아동이 신분을 보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② 아동이 자신의 신원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원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① 당사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임,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③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④ 아동이 부모 중 한 명, 부모 모두 또는 아동 자신의 구금, 투옥, 망명, 강제 추방,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 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 당사국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이 아동의 웰빙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 될 때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정보제공이 관련된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가족과의 재결합)

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가족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 또는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안이 신청자와 그 가족구성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협약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어떤 국가로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에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다른 권리들과 부합하여야 한다.

제 11 조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금지)

① 당사국은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제 12 조 (아동의 견해 존중)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 13 조 (표현의 자유)

① 아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든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탐색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② 이 권리의 행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 존중

2.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제 14 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①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③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 15 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①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② 이 권리의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 어떠한 것도 제한할 수 없다.

제 16 조 (사생활 보호)

① 아동은 그 누구라도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②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정보 접근)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특히 자신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웰빙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1.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 문화적, 국내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류 보급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3. 아동 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4. 대중매체가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선주민 아동이 겪는 언어적 필요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5.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여 아동의 웰빙에 유해한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8 조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 공동의 책임)

①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본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②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부모가 모두 일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아동돌봄시설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①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20 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의 보호)

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했거나 가정 환경에 남아 있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을 보장해야 한다.

③ 이러한 보호는 위탁양육, 이슬람법의 카팔라(Kafalah)[5], 입양,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다. 대안 양육을 모색할 때는 아동양육이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5] 카팔라(Kafalah)란, 아랍어로 "다른 아동을 돌보는 것"을 뜻한다. 이는 회교도국가들의 수양자제도를 의미하며 가족질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법제도에 의해 보충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닌 수양부모와 수양자의 관계로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다양한 아동보호 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국제아동인권센터(2017) 일반논평12호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 참고)

제 21 조 (입양)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1.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해 오직 권한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아동의 법적 신분 및 필요한 경우, 상담 등에 기초한 관계자들의 입양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여야 한다.

2. 국외입양은 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을 찾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도 아동의 출신국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안적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3. 국외로 입양된 아동도 국내입양 사례에 적용되는 안전보호 기준을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4.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알선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적절한 경우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본 조항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체계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입양알선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2 조 (난민 아동)

① 당사국은 아동이 난민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여겨지는 아동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본 협약 및 해당 국가의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권한 있는 정부간 기구[6] 또는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아동을 보호·지원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난민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 추적에 기울이는 노력에 적절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란, 정부간 국제기구 또는 단지 국제기구라고도 하며 국가가 개별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 목적을 국가간의 기구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적 측면의 목표가 있다. 국제연합(UN) 또한 대표적인 정부간 기구이며, 그 외 국제난민기구(UNHCR),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UNESCO) 등이 있다.

제 23 조 (장애 아동)

①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이 그들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여건에서, 충분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향유해야 함을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특별한 돌봄을 받을 장애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아동과 그들의 양육자에게 아동의 여건과 부모 및 기타 양육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장애 아동의 특별한 욕구를 인식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경우 부모나 기타 양육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이 가능한 사회적 통합, 문화적 정신적 발달을 포함한 개인의 발달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동이 교육 훈련, 의료 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여가 기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④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접근할 수 하는 것을 비롯해 예방의학 및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 분야에 관한 적절한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 24 조 (아동의 건강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①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사망률 감소를 위한 조치

2. 일차보건의료의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3. 일차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고려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히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식수 제공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4.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5.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이 아동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

화,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교육,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6.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부모교육 및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조치

③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 25 조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해야할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돌봄, 보호,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배치결정된 아동이 그들에 대한 처우 및 결정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 26 조 (사회보장제도)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양육책임자의 재원과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아동이 직접 또는 대신하여 행하는 혜택 신청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② 부모 또는 그 외 아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③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그 외 아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④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그 외 아동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해 재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협약 가입이나 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제 28 조 (교육)

①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기회균등에 근거하여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일반 및 직업교육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 도입 및 필요 시 재정적 지원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침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학교 출석률 및 중퇴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본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 및 현대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부문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 29 조 (교육의 목적)

① 당사국은 아동 교육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 아동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

2.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3. 아동의 부모와 아동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서로 다른 문명의 차이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4.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선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5.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② 교육기관의 교육은 국가가 설정한 최소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요청 하에,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선주민 및 소수인종 아동의 고유문화 향유)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선주민 아동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생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 31 조 (휴식·놀이 및 여가)

① 당사국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문화 예술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제 32 조 (아동 노동)

① 당사국은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기타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1.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2.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3. 본 조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 규정

제 33 조 (약물 남용)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4 조 (성 착취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1.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성적 활동에 관여하도록 아동을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성매매나 기타 불법적인 성적 활동에 아동을 착취하는 행위

3. 음란한 공연 및 그 소재로 아동을 착취하는 행위[7]

제 35 조 (아동 유괴·매매 및 거래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어떠한 목적과 형태로든 아동탈취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6 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영역에 해로운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37 조 (범죄에 연루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조치)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어떤 아동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2. 어떤 아동도 불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구속 및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 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

3.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그들 나이의 욕구를 고려한 방법으로 처우받아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서신과 면회를 통해 가족과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4.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적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받을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신의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구체적인 해석·실시에 관한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부속문건인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참고할 수 있다.

제 38 조 (무력충돌에서의 아동 보호)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 있는 무력충돌[8]에 있어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당사국은 만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만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삼가야 한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는 경우 최연장자부터 징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무력충돌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무력충돌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9 조 (피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방임, 착취, 학대, 고문,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충돌로 인한 아동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는 아동의 존엄성, 자기 존중 및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40 조 (소년사법)

① 당사국은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 또는 유죄가 인정된 모든 아동이 타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하고 아동의 연령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맡게 될 발전적인 역할의 바람직성을 고려하는 등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② 이 목적을 위해 국제규범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 또는 유죄로 인정받지 않는다.

2.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보장받는다.

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

나. 피의사실에 대한 변론 준비와 제출에 있어 직접 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적 지원을 비롯한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8]구체적인 해석·실시에 관한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부속문건인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법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아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지체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아동의 연령이나 상황,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라.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도록 하는 것과 대등한 조건으로 자신을 대변할 증인의 출석과 심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결 및 그에 따른 모든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위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바.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 통역 지원을 받아야 한다.

사.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완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③ 당사국은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 또는 유죄가 인정된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2.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온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루는 조치

④ 아동의 웰빙에 적절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 및 위법행위에 맞는 처우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돌봄,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위탁양육, 교육 및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기타 대안적 방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제 41 조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규정)

협약은 아동권리실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규정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당사국의 법

2. 당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2부(이행과 모니터링)

제 42 조 (협약을 널리 알릴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제 43 조 (아동권리위원회)

① 본 협약의 의무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달성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본 협약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명망 높고 능력을 인정 받은 18명의 전문가[9]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균형 있는 지역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 국민 중에서 선출[10]되며,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들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 1인을 위원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이후 2년마다 실시된다. 매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전에 유엔사무총장은 2개월 내에 후보자를 지명해 제출하라는 서한을 당사국에 발송한다. 사무총장은 지명된 후보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당사국이 이를 지명했는지 작성해 협약 당사국들에게 제시한다.

⑤ 선거는 유엔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하며, 회의에 출석해 투표한 당사국 대표들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임될 수 있다. 단,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첨으로 선정된다.

⑦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특정 이유로 인해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

9 초기에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나 2003년부터 위원회는 18명의 전문가로 증원하여 구성되고 있다.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lacing the word "ten" with the word "eighteen". The amendment entered into force on 18 November 2002 when it had been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128 out of 191).

10 위원은 개인의 능력으로 활동하며, 국가에 의해 선발되었지만 그들은 국가 및 특정 기관을 대변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대표(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활동하였으며, 2007-2011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⑨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사무관을 선출한다.

⑩ 위원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유엔본부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본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되고 검토된다.

⑪ 유엔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⑫ 본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국가의 아동권리이행 보고 의무)

① 당사국은 본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 실현을 위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행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제출한다.

1.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2. 그 후 5년마다

②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본 협약의 의무 이행 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 첫 통합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따라 제출할 후속보고서에 이미 포함된 기초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④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제출한다.

⑥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시민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5 조 (협약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본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1. 전문기구,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및 기타 유엔기관들은 본 협약 중 그들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 이행과 관련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게 각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 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기타 유엔기관들에게 그들의 활동 분야에 한해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보고서에 기술적 자문 지원 요청 또는 그 필요성을 명시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요청이나 명시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관련있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기타 권한있는 기구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11]

4. 위원회는 본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해 접수한 정보에 기초해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해당 논평과 함께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된다.

제3부(협약과 관련한 기타 정보: 부칙)

제 46 조 (서명)

본 협약은 모든 국가가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제 47 조 (비준)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1] 200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이나 교육수준 등에 관계없이 범세계적으로 아동들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유엔총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전 세계적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조사(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7/90 of 2002)하도록 하였고,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 에 관한 심층연구가 진행되었다. '유엔아동폭력보고서'(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코피아난 사무총장에 의해 발표 되었다. (국문번역본은: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 48 조 (가입)

본 협약은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9 조 (발효)

① 본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②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 본 협약은 해당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에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개정)

①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며 승인절차를 위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③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국은 계속해서 본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받아들인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제 51 조 (유보조항)

① 유엔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 당사국이 유보조항의 문서를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배포한다.

② 본 협약의 목적 및 목표와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유보조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문을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보조항 철회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 52 조 (탈퇴)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본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 탈퇴는 사무총장이 통지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제 53 조 (수탁자)

유엔사무총장은 본 협약을 보관하는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 54 조 (기탁)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본 협약의 원본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임대표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했다.